

교구 근속 교리교사 표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구 포상 규정 제3조제3항 「교구 근속 교리교사 표창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리교사와 대리구, 교구 차원의 청소년(초, 중·고등부) 관련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1. 3년 근속(3년 이상~5년 미만) 표창
2. 5년 근속(5년 이상~10년 미만) 표창
3. 10년 근속(10년 이상~15년 미만) 표창
4. 15년 근속(15년 이상~20년 미만) 표창
5. 20년 근속(20년 이상~25년 미만) 표창
6. 25년 근속(25년 이상) 표창

제4조(표창권자) 본 규칙에 의한 표창은 대리구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표창의 조건) 근속 교리교사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1. 당해연도 근속 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각 본당 및 대리구, 교구에서 교리교사로(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재직 중인 자(단 연차 계산은 C.T.M.S.에 등록된 근속 기준월로부터 만으로 계산하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휴직기간이 없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할 경우에는 연속 재직으로 인정은 되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가. 군 복무 기간
 - 나. 임신·출산
 - 다. 병·질환
 - 라. 유학 및 해외 연수
 - 마.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전·출입(3개월)
 - 바. 가~마 의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한 휴직사유서(별지2)를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대리구 청소년국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인정된다.
3. 근속 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리교사 교육 중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

4. C.T.M.S.(주일학교 교리교사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

제6조(표창 대상자 추천) 표창 대상자 추천은 각 본당에서 활동 중인 교리교사는 본당 주임신부가, 대리구나 교구의 청소년(초, 중·고등부) 관련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소속 청소년국장 신부가 추천한다.

제7조(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대리구 청소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구비 서류(별지 1)

가. 본당 소속 대상자는 주임신부의 추천서, 대리구나 교구의 청소년(초, 중·고등부) 관련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는 소속 청소년국장 신부의 추천서

2. 20년, 25년 근속 표창

가. 교적 사본 1부(본당)

제8조(표창의 시기 및 방법) 근속 표창의 시기 및 수여 방법은 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각 대리구 또는 지구에서 행한다.

제9조(표창의 특전 및 부상)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부상은 각 지구(3년, 5년, 10년, 15년 근속 표창) 및 대리구(20년, 25년 근속 표창)에서 부담한다.

1. 3년 근속 표창 - 3년 근속 표창패, 부상 오만원 상당의 상품권

2. 5년 근속 표창 - 5년 근속 표창패, 부상 일금 십만원

3. 10년 근속 표창 - 10년 근속 표창패, 부상 일금 이십만원

4. 15년 근속 표창 - 15년 근속 표창패, 부상 일금 삼십만원

5. 20년 근속 표창 - 20년 근속 표창패, 부상 해외 성지순례 경비 보조(일금 이백만원)

6. 25년 근속 표창 - 근속 교구장 축복장, 대리구장 친필 서명이 있는 성경

제10조(표창 취소) 표창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미 표창하였더라도 표창패 및 부상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자는 차기 표창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추천서 작성시 근속 연수의 허위 사실 기재

2. 제1항과 같은 유사한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규칙의 변경) 이 규칙의 변경은 국장급 이상의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근속 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

지구		본당		부서	초등		중고등		장애아	
성명				표창대상(선택)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세레명				연락처(휴대폰)						
근속 교리교사 경력 기간 기입										
교구명	본당명		교리교사 활동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근속으로 인정되는 휴직이 있는 경우, 별지 2(휴직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속 재직 인정 : 군 복무 기간 / 임신·출산 / 병·질환 / 유학 및 해외 연수 /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전·출입(3개월)

위와 같이 근속 교리교사로 추천합니다.

년 ____월 ____일

주임(지도)신부 _____(인)

휴 직 사 유 서

본 당 명 (부 서 명)		휴직자 성명 (세 례 명)	
연 락 처		휴직 사유	
휴직 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 유	가. 군 복무 기간 나. 임신 · 출산 다. 병 · 질환 라. 유학 및 해외 연수 마.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전 · 출입(3개월) ※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면 근속에 해당되는 휴직 처리가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1.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근속 휴직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 제출서류 관련 - 군 복무 :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등 군 복무 기간이 기재된 증빙 서류 - 임신·출산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의 출생일을 알 수 있는 서류 - 병·질환 : 일반진단서, 병원진료기록 사본 등 병·질환 사실 증빙 서류 - 유학 및 연수 : 유학 및 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입 :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교적 사본 등 전·출입 사항 증빙 서류 <u>2. 위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연속 재직으로 근속을 인정하나,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u>		
확 인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 20 . . . 성 명 : _____(인) 주임(지도)신부 : _____(인)		